

벤처확인기업

우대지원제도 세부내용



분류	세분류	내용	법적근거
세 제	법인세 소득세 감면/공제/ 비과세/ 면제/이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세·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%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상: 창업벤처중소기업(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) 	조세특례제한법 § 6②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세 10% 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상: 기술혁신형중소기업(벤처기업, 이노비즈, 연구인력개발비 매출액 5% 이상 기업, 신기술/보건신기술/신제품/혁신형제약기업 등 인증기업)을 합병하는 경우 	조세특례제한법 § 12의3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세 5% 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상: 내국법인이 202년 12월 31일까지 창업자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	조세특례제한법 § 13의2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득세 비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상: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인력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	소득세법 시행령 § 12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·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비율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3천만원 이하 100%, 5천만원 이하 70%, 5천만원 초과 30% 	조세특례제한법 § 16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행사이익: 행사 당시 시가 - 실제 매수가액 · 대상: 벤처기업의 임직원 	조세특례제한법 § 16의2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식교환 및 제휴법인에 현물출자 후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받아 양도차액 발생 시 제휴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가능 · 대상: 비상장 벤처기업(연구·인력개발비 5% 이상 투자기업 포함)의 주식 10% 이상을 보유한 주주 -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의 50% 이상을 재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가능 · 대상: 벤처기업 또는 7년 이내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주주 	조세특례제한법 § 46의7① 조세특례제한법 § 46의8①
세금 감면	지방세 감면 (취득세/ 제산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득세 75% 감면 - 제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, 이후 2년간 50%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한: 2023년 12월 31일까지 · 대상: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, 청년창업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	지방세특례제한법 § 58의3②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공계 인력의 활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취업 석·박사 학위자 또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 시 재정지원 또는 세금감면 	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§ 16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, 출자금액과 1,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· 대상: 벤처기업 임직원 	조세특례제한법 § 88의4①

벤처확인기업

우대지원제도 세부내용



분류	세분류	내용	법적근거
금융	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반 30억원 → 벤처 50억원,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70억원 	기술보증규정
	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기자본 : 30억원 → 15억원 ·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: 20억원 → 10억원 ·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→ 10억원 이상 ·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→ 50억원 이상 ·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→ 50억원 이상 	코스닥시장 상장규정 § 28①2
	벤처투자 허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학기술진흥기금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금의 10% 이내 투자 허용 	과학기술기본법 § 22③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연금을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 허용 	국민연금법 § 102②7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허용 	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§ 8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을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적립금의 10% 이내 투자 허용 	사립학교법 § 32의2③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·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이노비즈, 메인비즈, 신기술사업자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§ 249의23
	우선보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 등에 우선으로 신용보증 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 5
	융자대상 요건 하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산육성자금의 융자대상 중 국방벤처협약기업은 최근 3년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%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	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(방위사업청고시) § 6④

벤처확인기업

우대지원제도 세부내용



분류	세분류	내용	법적근거
창업	벤처인수 합병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벤처기업에 대해 현물출자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동산, 부동산, 채권 →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도 포함 - 현물출자 대상 감정평가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상법」에 따른 공인감정인(감정평가사, 공인회계사) → 기술평가기관도 포함 · 기술평가기관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기술보증기금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환경공단, 국가기술표준원, 한국과학기술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정보통신사업진흥원 	<p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 6①</p> <p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 6②</p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·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	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§ 5②⑤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합병 절차의 간소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으로 허용하는 등 요건 하향 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 15의3②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% 이하이면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 15의9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벤처기업이 타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80% 이상 보유하면,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 15의10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업의 양도 계약 간소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벤처기업이 영업을 타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% 이상을 타 회사가 보유하면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 15의11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합병 절차의 간소화(요건 하향) 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 15의3
	교수·연구원 창업 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수·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(5+1년) - 교수·연구원(국방분야 연구기관 제외)이 그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·겸직 가능 	<p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 16①</p> <p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 16②</p>

창
업

벤처확인기업

우대지원제도 세부내용



분류	세분류	내용	법적근거
입 지	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·연구기관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학교원, 학생, 연구원, 벤처창업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,000m² 이내의 실험실공장을 설치 가능 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 18의2①
	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보육센터에 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·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 가능 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 18의3①
	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 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득세·재산세 37.5% 경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한: 2022년 12월 31일까지 · 대상: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	지방세특례제한법 § 58④
	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벤처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득세(2배), 등록면허세(3배), 재산세(5배) 증과 적용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한: 2023년 12월 31일까지 · 대상: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	지방세특례제한법 § 58②
	입주 우선순위 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 순위 우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07년 12월 31일 이전 지정고시된 임대전용산업단지 대상 - 시화국가산업단지(시흥스마트허브) 입주 우선순위에서 첨단·지식·정보통신산업과 벤처기업은 동일 순위 중 우선 입주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·운용에 관한 지침 (국토교통부고시) § 12④ 시화국가산업단지 (시흥스마트허브) 관리기본계획 (산업통상자원부고시)

분류	세분류	내용	법적근거
특 허	우선심사	- 특허 및 실용신안, 디자인 등록, 출원 시 우선심사	특허법 시행령 § 5 실용신안법 시행령 § 5
	전용실시권 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체산권 사용에 대한 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체산권 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(단, 휴·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상호합의를 거쳐 우선적 전용실시권 부여) · 대상: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(또는 연구원) 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 16의7①

벤처확인기업

우대지원제도 세부내용



분류	세분류	내용	법적근거
인력	스톡옵션 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임직원 → 기술·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, 대학, 연구기관, 벤처기업이 주식의 30%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 16의3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반기업 10%, 상장법인 15% → 벤처기업 50% 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§ 11의3⑦
	연구소 전담요원 요건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구전담요원의 수 : 소기업 3명(3년 미만 2명), 중기업 5명,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, 대기업 10명 이상 → 벤처기업 2명 이상 	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§ 16의2①③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창작전담요원의 수 : 일반 10명, 중소기업 5명 이상 → 벤처기업 3명 이상 	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§ 26의①
	입영연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영일자 연기 범위(2년)에서 2회에 한정하여 연기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상 : 벤처기업창업가, 벤처기업예비창업가, 정부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사람 등 	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(병무청훈령) § 25① *별표 제8호 아목
	산업 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요건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상시근로자수 : 일반 10인 이상 →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와 취업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 5인 이상 	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(병무청훈령) § 10①
	벤처 인재 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벤처기업 경영인은 공직후보자로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수 있음 	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(인사혁신처예규) § 2·5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벤처기업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는 여성인재로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수 있음 	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(여성가족부예규) § 2·4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는 창업보육 센터의 "전문인력" 자격 부여 	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(중소벤처기업부고시) § 5①
	벤처기업 근무 인턴 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학생이 중소기업·벤처기업에서 인턴근무 시 학점부여(자격) 허용 (2년 이내) 	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§ 12
	전문가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과학기술유공자들에 의한 창업 및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	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§ 12

분류	세분류	내용	법적근거
광고	할인·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TV·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% 할인 : 정상가 기준 35억원 (105억/3년) 한도 - TV·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(택 1) : TV 최대 50%·라디오 최대 70%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상 :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· www.kobaco.co.kr/smad/ 	KOBACO 자체규정